



즉시 배포용: 2018년 2월 12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연방세 증가로부터 뉴욕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포함한 30일간  
수정안 발표**

**12개의 민주당 성향 주를 목표로 한 연방정부의 거의 삭감에 가까운 SALT 공제금 법안에  
대한 뉴욕의 조치**

**30일간의 수정안은 선택성 급여세, 자선적인 기부에 대한 새 기금 및 연방세법으로부터  
분리하는 법안에 대한 제안서 포함 예정*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행정부 예산에 고용주가 새로운 급여세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연방세 증가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가능한 법안을 포함하는 30일간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밖에 법안은 자선 기부금으로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하는 두 가지 새로운 기금을 창설하여 납세자들이 공제금 세부 항목을 작성하여 연방세로부터 이런 자선금을 공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예산 수정안은 주 세법을 연방 세법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하여 주 납세자들이 연방세 인상 때문에 주세까지 인상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
**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** “연방정부가 뉴욕에 직접적인 경제 타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법안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뉴욕시민들을 워싱턴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. 우리주의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하여 우리는 뉴욕 전역 가족들의 권리와 지갑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.”

**주 예산부 책임자 Robert F. Mujica, Jr.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** “행정부 예산에 대한 이런 수정안은 뉴욕의 납세자, 우리주의 예산 및 우리의 경제적 경쟁력을 보호할 것입니다. 뉴욕의 52개의 카운티는 평균 SALT(State And Local Taxes)보다 10,000달러 이상 인상되어 가장 많은 비율의 납세자가 세금 인상을 당하면서 이 연방세법 때문에 기타 주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비싸집니다.”

조세재무부(Taxation and Finance)의 Nonie Man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뉴욕주와 그 시민들을 상대로 불공평하게 개정된 연방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옵션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기관의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하였습니다. 이 수정안들은 우리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에게 공평성을 찾아줄 것입니다.”

30일간의 수정안으로 발전해온 이 법안은 조세재무부(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)가 1월에 발표한 예비 [보고서](#)에 따라 수립될 것입니다.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뉴욕시민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연방 법안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주 세법 개정의 선택 사항들의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. 주 및 지방정부, 학계, 그리고 민간 부문 전문가들과의 세심한 연구와 광범한 상담을 거쳐 제기한 개정안은 뉴욕시민 보호에 대한 실용적인 선택사항들임을 인정받았습니다.

30일간 수정안을 포함한 법안은 아래 경로를 통하여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.

- **새로운 고용주 보상비용 세금(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Tax, ECET) 시스템 창설:** 연방세 개혁법이 개인에 대한 주 및 지방세 공제금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기업은 이런 한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. 30일간 법안에 따르면, SALT 공제금 한도와 관련하여 인상된 세금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새로운 ECET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고용주는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이상 직원당 연간 급여액이 40,000달러를 초과한 모든 금액에 5%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. 진보적인 개인 소득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ECET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공제는 임금에서 떼는 개인 소득세를 삭감하여 ECET에 해당하는 주 세금 환급 신청자들이 가정 지출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 제안은 고용주에 직원의 연방세를 줄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의 세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이 법안에 따라 고용주가 2019년 과세연도의 대체 시스템에 가입하는 첫 연례 선택 기한은 2018년 10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. 이 가입 조건에 따른 혜택은 관련된 직원의 소득세 완화에만 그치지 않고 고용주의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. 이 선택사항 가입자는 40,000달러 이상 임금이 대한 새로운 소득세는 3년간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. 첫째: 1.5%, 두 번째 해: 3%, 세 번째 해 5%.

- **뉴욕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자선 기부:**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가 운영하는 두 가지 새로운 자선 기부 기금을 창설하여 뉴욕의 건강관리와 교육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기부금을 받습니다. 납세자들은 이런 자선 기부금 목록을 작성하여 자신들의 연방 및 주 세금 환납 공제금으로 신청할 수

있습니다. 또한, 기부를 한 모든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기부한 기부금의 85%에 상당하는 주 세금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밖에 수정안은 교육청과 기타 지방정부가 교육 및 건강관리에 대한 자선기금을 설립하도록 허가합니다. 이런 기금에 기부하면 기부금과 비례하는 지방 재산세 요금을 감소(지방 세금 공제금의 형태)할 수 있습니다.

- **연방세법과의 분리:** 이 주세법은 연방세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주세법은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하여 필요시 연방세 인상으로만 초래하는 15억 달러 이상의 주세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연방세 개정안은 주 및 지방세(SALT) 공제금 세부 항목들을 10,000달러로 제한하였습니다. 주지사는 주세를 이 제한액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뉴욕 납세자들이 주 소득세 환납액의 제한액을 통하여 인상되는 4억 4,100만 달러의 주세 인상에 관련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. 이 법안은 기타 연방 공제금 변경 내용과도 분리하여 2020년 재정연도(FY 2020)부터 주 납세자들이 연간 2억 6,900만 달러 절약하게 합니다. 30일간의 수정안은 또한 개인 세금 환납 신청자들에 대한 주 표준 공제금을 유지합니다. 이런 변경사항이 없으면 개인 환납금 신청자들은 주세 표준 공제금 환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또한, 뉴욕 납세자들은 2020년 회계연도로부터 연간 8억 4,000만 달러의 주세 인상 대상에 들게 됩니다.

주지사는 지난달에 연방 세법 공격에 대처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추진하고 연방 정부 고소를 위해 뉴저지와 코네티컷 주지사와 연맹을 맺었다고 **발표**하였습니다. 새 법안은 각 주가 자체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감소함으로써 주의 행정 능력을 효과적으로 감퇴하며 헌법에 위배되게 뉴욕과 기타 비슷한 상황의 주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새로운 연방 법은 이미 배정받는 연방 예산보다 워싱턴에 매년 480억 더 지불하는 뉴욕주에 불균형하고 불리한 영향을 끼칩니다. 뉴욕주 조세 재무부(State Department of Tax and Finance)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전체 SALT 공제금에 대한 단독 삭감은 뉴욕에 143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